

직원대의활동규칙

제 정 2005. 07. 13
 개 정 2007. 07. 16
 개 정 2008. 11. 06
 개 정 2010. 09. 29
 개 정 2015. 04. 30
 개 정 2015. 12. 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복무규정 제8조에 의한 직원의 대외활동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임원을 제외한 연구원 모든 직원의 대외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대외활동이라 함은 타기관의 용역(공동연구포함) 또는 자문 행위, 대학 등의 출강, 학술대회 등에서 본 연구원을 대표하는 발표 또는 토론,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본인 개인 명의로 발표하는 행위, 기타 다른 직을 겸하는 행위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개정 2008.11.6)

제4조(허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기관간 계약에 의해 연구수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개인자격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개정 2008.11.6)

1. 중앙부처 및 공공(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집필포함) 참여과제
2. 전북지역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연구과제
3. 기타 원장이 정하는 과제

②대학출강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6)(개정 2010.9.29)(개정 2015.4.30)

③대학에 출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조건에 따라 출강허가신

청서<별지서식2>를 작성,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1.6)(개정 2015.4.30)

- 1. 출강대학 : 전라북도 소재 대학
- 2. 강 좌 수 : 주1회 1강좌
- 3. 출강일수 : 출강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수 이내

④제3항 3호의 경우 출강일수는 출강자의 연차일수에서 공제한다.(신설 2008.11.6)

⑤대학 출강 이외의 대외활동의 연차공제는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신설 2015.4.30)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16)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6)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9.29)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4.30)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30)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1〉 (개정 2007.7.16)(삭제 2010.9.29)

<별지 서식2> (개정 2015.12.30)

출강허가신청서

결 재	원 장

■ 출강허가 신청 내용(주/야간)

학 교 명 (소재지)	강의과목	강 좌 수	출강시간 (요 일)	비 고

상기와 같이 출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 청 인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전북연구원장 귀하